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829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혁

원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변론 종결 2020. 7. 24.

판결 선고 2020. 8. 2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소14607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30. 01: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3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노량진역 8번 출구 부근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4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였고, 때마침 같은 도로 3차로에서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2019. 7. 2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로 295,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 상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 상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심야시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속도를 늦추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규정에 따라 적어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피해자 1명당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또는 공제금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되,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해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 소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자동차보유자 측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우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 상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피고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긴 하나,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심야시간대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속도를 늦추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피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피고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된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 피고의 과실비율을 90%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 전액을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고의 진료비 해당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해는 위[별표 1] 제1호 중 12급의 제3호 소정의 '척추 염좌'에 해당하므로²⁾, 그에 따른 원고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1,2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295,720원)은 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채광, 판사 이주현, 판사 권양희

- 1) 원고의 항소취지 제2항 중 '2018. 7. 26.'은 '2019. 7. 26.'의, '연 15%'는 '연 12%'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
- 2) 원고는, 피고의 상해(척추 염좌)가 위 [별표 1] 제1호 중 12급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